

# 졸업논문 시행 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2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 및 동 시행세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논문의 구분)** 졸업논문은 “논문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부(과)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3조(논문제출 자격)** 졸업논문 제출 자격은 최종 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.

**제4조(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시기)** ① 논문작성 계획서는 최종학년 초 소정기일내에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졸업논문은 최종학기 소정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논문 지도교수)** ① 학부(과)장은 해당학부(과)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지도교수를 수강 신청한 후 15일 이내에 배정하여야 한다.

② 학부(과)장은 확정된 논문 지도교수 명단을 지체없이 학장 및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논문심사)** ① 학부(과)장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부(과) 전임교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2인 이상 선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입학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논문 심사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**제7조(실기심사)** 실기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학부(과)인 경우 학부(과)장은 주제, 장소 및 심사위원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입학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논문심사 결과보고)** 학부(과)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소정서식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학장 및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)**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된 날로부터 2년 이내(군복무 기간 제외)에 2회에 한하여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다.

**제10조(논문심사 결과조치)** 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을 2년간 인정할 수 있다. 앞의 2년에서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.

② 졸업논문은 학점에 계산하지 않고 합격된 논문은 그 제목과 판정 결과를 학적부에 기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